

**군산시 공고 제 2011 - 829호**

군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녹지지역 조경 식재 제외 등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정하고, 효율적 건축심의 운영 등을 위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여 건축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켜 신뢰 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가.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효율적 심의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5조)
-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있어 업무대행 지정 절차, 대행수수료 지급 등을 따로 정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22조)
- 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개정으로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조례 위임사항을 삭제함. (안 제25조 제1항 제4호)
- 라. 미관지구안의 조경식재 기준을 따로 명확히 조정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실질적 조경식재를 유도하고자 함. (안 제25조 제3항 제3호)

**3. 의 견 제 출**

- 가.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 우 570-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건축과
  - (전화 : 063-450-4458 , FAX : 063-452-8828)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주무관 김지영(전화 : 450-445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영 제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군산시 건축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의2 중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교목 주변에 관목을 심고 의자·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축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4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라북도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건축심의대상) ①----- ----- 제5조제1항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만, 너비 25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미관지구안에서 연면적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4. <u>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u>
5. 「 <u>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u> 」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u>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u> 가. <u>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u> 나. <u>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u>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② 「 <u>건설기술관리법</u> 」 규정에 의한	② 「 <u>건설기술관리법</u> 」에 따른 건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제1항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을 받아야 한다.

1. 건축연면적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변경
2. 건축물의 동수(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층수를 2개동(2개층)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③ (생략)

제1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2. 증축 또는 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영 제14조제6항의 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영 제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군산시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 기준 등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에 따른 의한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9조의2(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② (생략)  
③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

제19조의2(용도변경 완화) -----  
-----  
-----  
-----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신설>

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군산시 공고 제 2011 - 856 호**

군산시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판인·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완료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3. 의 견 제 출**

가.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징수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징수과  
(전화 : 063-450-6133 , FAX : 063-452-918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과 주무관 박정희(전화 : 450-61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2011 - 856호

### 군산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인발급기”를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로 하고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를 “무인발급기·주민 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계기 및 무인발급기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무인발급기”를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계기·무인발급기·주민 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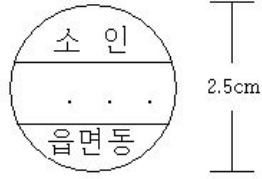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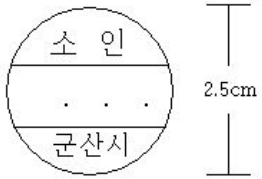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소인인규격 (지름 2.5cm) (제15조제2항 관련)

(시)

(읍·면·동)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 -----.
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 -----.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 ----- -----.
제14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수입금의 정산) <조제목 개정 2001. 06. 15>	제14조(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수입금의 정산)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③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증지의 소인) ①증지를 수납한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즉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  
-----  
-----  
-----  
-----.

④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  
-----  
-----.

제15조(증지의 소인) ①-----  
-----  
-----  
-----.  
----- 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

② (현행과 같음)

#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1-864호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 군 산 시 장

### 1. 개 정 이 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쓰레기봉투가격 산정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 요 내 용

가. 별표8(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

- ▶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최종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분을 삭제

### 3. 의 견 제 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11년 6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위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063-450-6168, FAX: 063-452-8166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청소과 청소행정계(063-450-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8 ]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제24조제2항 관련)

<산정방법>

$$L \text{당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이익}$$

- (주) 1) 쓰레기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 가격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4) 판매수수료 요율은 10%를 기준으로 적용 <(L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L) × 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0.1> 산정하여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5) 판매가격은 원단위에서 절상함
- 6) 공급가격은 산출가격에 판매가격의 원 단위 절상으로 인한 차액을 포함 결정

<판매가격>

(단위:원)

용량(ℓ)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5	135	15	150	
10	225	25	250	
20	405	45	450	
30	630	70	700	
50	990	110	1,100	
100	1,980	220	2,200	

#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1-870호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 주민의견 반영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 제안이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44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242호, 2010. 6. 29. 공포, 2010. 6. 30.시행)됨에 따라, 자전거의 날·자전거주차장설치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변경 내용

가. 상위법 및 시민의 의견에 따라 용어 재정비

○ “자전거 정비소” → “자전거 수리센터”로 수정

○ 공공자전거의 정의 : “공공자전거란 군산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 자전거주차장의 정의 :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4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조항

신설

#### ○ 수정(안)

제4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러지 아니하다.

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5조(시의 책무) 자전거도로 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추가

#### ○ 입법예고(안)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 ○ 수정(안)

제5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시민참여·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6. 자전거도로 설치시 도로의 연계·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상위법에 따라 제11조(자전거주차장 설치) 개정

#### ○ 입법예고(안)

제10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의 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부설 주차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5의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수정(안)

제11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의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마. 요금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해야 하므로 단서 조항 삭제

○ 입법예고(안)

제14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단, 제12조제4항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발생시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수정(안)

제14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입법예고(안)

제14조(자전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종합터미널, 역, 시내의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대형유통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자전거정비소 등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하 “자전거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편의시설의 요금, 운영방법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기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④ 시장은 자전거 교육장에 자전거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수정(안)

제15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종합터미널, 역, 시내 의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대형유통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기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 등) ④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기관에 민간단체 및 운영사항 추가 등

○ 입법예고(안)

제16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우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수정(안)

제17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은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우선수범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를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자전거이용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군산 시청 환경위생과(전화:450-4793, FAX:452-8165)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자전거정책계(전화:450-47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호

###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군산시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공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9. "분리대"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10. "공공자전거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通行 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제3조제1항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5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시민참여·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6. 자전거도로 설치시 도로의 연계·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

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체력향상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에 참여한다.

제7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보험)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자전거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5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종합터미널, 역, 시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대형유통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기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은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은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를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자전거이용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교통의식의 고취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타기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자전거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전거타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운전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기증·공공자전거·재생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번호판을 교부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군산경찰서, 군산교육지원청)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정책계장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24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4. 사망·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2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 ----- ----- ----- ----- -----.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 ----- -----.
<신 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 도로·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군산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 횡단도로”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7.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라 함은 시민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8. “분리대”라 함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생 략)

1. ~ 2. (생 략)

3.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신 설>

6.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자전거주차장”이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8.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공자전거만을 보관·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9. “분리대”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10. “공공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공공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자전거 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 구간을 구분한 차로

<신 설>

6. (현행과 같음)

7.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공공자전거대여소”란 공공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사업을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러지 아니하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생 략)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 제2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

제4조(시의 책무)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현행과 같음)

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

② 활성화계획에는-----.

1. ~ 8. (현행과 같음)

③ ---- 활성화계획을 -----
-----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

④ -----
----- 제1항 및 제2

다.

제5조(시의 책무) (현행과 같음)

- 1.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시민참여·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6. 자전거도로 설치시 도로의 연계·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현행과 같음)

제7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현행과 같음)

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7조(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9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개선 기준의 설정) -----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주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험)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 기준의 설정) (현행과 같음)

제9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전거보험)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의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부설 주차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5의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0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자전거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의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1조에 따른 -----

제13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③ ----- 제11조제1항에 따라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신 설>

제13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단, 제12조제4항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발생시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종합터미널, 역, 시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대형유통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자전거정비소 등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하 "자전거 편익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편익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편익시설의 요금, 운영방법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기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자전거의 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관리·운영 등에

제15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관리·운영 등에

제14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에 따라 -----

-----.

제15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

-----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자전거 수리센터를 -----

③ ----- 자전거 수리센터의 -----

④ -----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

제16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 자전거 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출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신 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출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교통의식의 고취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타기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자전거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전거타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운전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영에 -----.

제17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은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출선수범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를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자전거이용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p>2. 유관기관 공무원(군산경찰서, 군산교육청)</p> <p>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p> <p>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p> <p>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제23조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p> <p>4. (생략)</p> <p>제2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p> <p>② (생략)</p> <p>제28조(수당과 여비등) 시장은 위</p>	<p>의원</p> <p>2. 유관기관 공무원(군산경찰서, 군산교육지원청)</p> <p>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1명 ----- 자전거정책계장 ----- -----.</p> <p>제25조(위원의 임기) ① ----- -----하되, 1번-----.</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23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p> <p>4. (현행과 같음)</p> <p>제27조(회의) ① ----- -----매년 1회-----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수당과 여비 등) -----</p>	<p>제25조(위원장의 직무 등) (현행과 같음)</p> <p>제26조(위원의 임기) (현행과 같음)</p> <p>제27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24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p> <p>4. (현행과 같음)</p> <p>제28조(회의) (현행과 같음)</p> <p>제29조(수당과 여비 등) (현행과</p>
---	--	--

<p>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9조(시행규칙) (생략)</p>	<p>----- --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p> <p>제2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같음)</p> <p>제3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	--	---------------------------------------

군산시 고시 제2011- 36호

## 고 시

1. 군산시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에 의한 사업시행(변경)계획서를 동법 제28조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0-447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06월 일

군 산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군산시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군산시 삼학동 881-2번지 일원
- 면 적 : 31,954㎡

###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 성 명 : 군산시장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년도 : 2010년 ~ 2013. 12.

### 5.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변경없음)

- 시행인가일 : 2010년 12월 15일

### 6. 변경사유 및 그 내용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변경(내용 별첨)

## 군산시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변경)계획서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3	공공공지	삼학동 881-5일원	-	2,837	2,837		금회설치

####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7	노 외 주차장	삼학동 265-14일원	-	1,430	1,430		기정비된 주차장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6	8	국지 도로	254	삼학동268-35 중2-3	삼학동287 중3-47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46	8	국지 도로	260	삼학동268-35 중2-3	삼학동287 중3-4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4	6	국지 도로	365	삼학동266-5 소2-45	삼학동789-11 소2-47	일반 도로	건고525 (67.7.22)	
변경	소로	3	44	6	국지 도로	269	삼학동275-19	삼학동789-11 소2-47	일반 도로	건고525 (67.7.22)	
기정	소로	3	50	6	국지 도로	222	삼학동883-1 중2-3	삼학동311-21 토지구역계	일반 도로	전북고136 (87.10.22)	
변경	소로	3	50	6	국지 도로	223	삼학동889-5 중2-3	삼학동311-21 토지구역계	일반 도로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3	4-37	4	국지 도로	70	삼학동275-15 소2-46	삼학동 소3-50	일반 도로	(78.544.22)	
변경	소로	3	4-37	4	국지 도로	36	삼학동275-45	삼학동275-45 소3-50	일반 도로	(78.5.22)	

###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지급

## 4. 세입자의 주거대책(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지급

##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율 등에 관한 건축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 폐 율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적 륜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높 이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변경없음)

- 지장물 철거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발생하는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성상별, 재활용 가능여부 등으로 분리, 수집하여 위탁처리 업체로 하여금 가능한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처리토록 함
-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등 군산시 쓰레기 처리 계획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

##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학교보건법 검토 결과

조사항목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검토 의견		
소음 진동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dB(A)]	65이하	50이하
	진동[dB(V)]	70이하	65이하
미세먼지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		
교통안전	학생이 정비구역을 통학하게 되는 경우 - 학생들의 등 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시 설	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의 청소년 위해시설 설치 금지		

## 8. 시행규정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군산시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 2) 정비사업의 시행년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 시행년도 : 2010년 ~ 2013. 12.
- ▶ 시행방법 : 현지개량 방식

## 3)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 사업비 : 3,164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4) 공고, 공람 및 통지의 방법(변경없음)

- ▶ 공고, 공람 : 시보, 군산시 홈페이지, 삼학동주민센터 게시관 등
- ▶ 통보 : 개별통보

## 5)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 감정평가에 의함

## 6)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 위 치 : 군산시 삼학동 881-2번지 일원
- ▶ 면 적 : 31,954m<sup>2</sup>

## 7)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변경없음)

- ▶ 주 소 :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 ▶ 성 명 : 군산시장

## 8)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토지 및 지장물등의 세목 변경) : 내용 별첨

## 9)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되는 국·공유지 조서 : (변경없음)

## 10) 관계도서 : 게재 생략(변경없음)

## 11) 기타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변경)조사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기정	군산	삼학	880-19	도	1,418	49	국					
2	기정	군산	삼학	881-2	대	146	146	군산시 삼학동 881-2	강충협				
3	기정	군산	삼학	881-5	대	446	44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752	허일량				
4	기정	군산	삼학	881-6	대	287	287	군산시 삼학동327-18	전관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9 크로바아파트 107/1302	오석주	근저당	883-11합병
5	기정	군산	삼학	881-7	대	23	23	국(재무부)					
6	기정	군산	삼학	881-8	대	83	83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1-2 금강아파트 104/206	임선옥				
7	기정	군산	삼학	881-10	대	80	80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주공아파트 315/405	김용환				
8	기정	군산	삼학	881-11	대	30	30	군산시 삼학동 881-11	경채옥				
9	기정	군산	삼학	881-12	대	26	26	군산시 삼학동888	김재준				
10	기정	군산	삼학	881-13	대	40	40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482-1	이조원				
11	기정	군산	삼학	881-14	대	46	46	군산시 월명동28-25	오세순				
12	기정	군산	삼학	881-15	대	86	86	군산시 삼학동 881-15	김봉순				
13	기정	군산	삼학	881-16	대	36	36	군산시 삼학동 881-16	정준섭				
14	기정	군산	삼학	881-17	대	43	43	군산시 삼학동 881-17	한덕현	삼학동 881-17	한원순	근저당	
15	기정	군산	삼학	881-18	대	53	53	군산시 삼학동888	배순초				
16	기정	군산	삼학	881-19	대	63	63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330-3	신흥칠				
17	기정	군산	삼학	881-20	대	33	33	군산시 경창동 511-6 오르빌아파트 102/502	김우현				
								군산시 삼학동 881-20	한연홍				
18	기정	군산	삼학	881-21	대	13	13	군산시 삼학동 881-47	이해관				
19	기정	군산	삼학	881-22	대	20	20	군산시 수송동 830-1 수송세영 리첼아파트 106/601	박명호				
20	기정	군산	삼학	881-23	대	7	7	군산시 대명동 384-32	김형대				
21	기정	군산	삼학	881-24	대	46	46	삼학동 888	김필남				
22	기정	군산	삼학	881-30	도	10	10	국(건설교통부)					
23	기정	군산	삼학	881-31	도	7	7	국(건설교통부)					
24	기정	군산	삼학	881-32	도	10	10	국(건설교통부)					

25	기정	군산	삼학	881-33	도	7	7	국(건설교통부)					
26	기정	군산	삼학	881-34	도	10	10	국(건설교통부)					
27	기정	군산	삼학	881-38	대	30	30	군산시 삼학동 813-11	황기열				
28	기정	군산	삼학	881-39	대	30	30	군산시 산북동3542 산북주공아파트 207/208	여정수				
29	기정	군산	삼학	881-40	대	26	26	전북 김제시 용지면 예촌리 6-14	김봉일	군산시		지상권	
30	기정	군산	삼학	881-41	대	23	23	군산시 삼학동 881-41	정진미				
31	기정	군산	삼학	881-42	대	30	30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595	전복순				
32	기정	군산	삼학	881-43	대	36	36	군산시 나운동 345 롯데아파트 102/605	김현주				
33	기정	군산	삼학	881-44	대	40	40	군산시 삼학동 881-15	김봉순				
34	기정	군산	삼학	881-45	대	30	30	군산시 대명동 384-32	김형대				
								군산시 삼학동 881-45	노인국				
35	기정	군산	삼학	881-46	대	10	10	군산시 삼학동 881-1 대우아파트 105/1002	강대복				
36	기정	군산	삼학	881-47	대	26	26	군산시 삼학동 881-47	이해관				
37	기정	군산	삼학	881-55	대	17	17	군산시 삼학동 881-16	정준섭				
38	기정	군산	삼학	881-56	대	123	123	군산시 삼학동881-56	조정숙				
39	기정	군산	삼학	881-57	대	40	40	군산시 삼학동 881-57	주명준	군산시 조촌동 482-15	홍부전	근저당	
								군산시 나운동 45 공공영구임대아파트 403/406	김경호				
40	기정	군산	삼학	881-60	대	69	69	군산시 삼학동888	황창학				
								군산시 삼학동888	정연봉				
								군산시 삼학동888	김을득				
41	기정	군산	삼학	881-63	대	33	33	군산시 삼학동 881-63	여인국				
42	기정	군산	삼학	881-65	대	56	56	군산시 삼학동 888	이낙빈				
43	기정	군산	삼학	882-2	대	17	17	군산시 삼학동 327-18	전관용				
44	기정	군산	삼학	882-3	대	145	145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535-53	석동원				
45	기정	군산	삼학	882-4	대	13	13	국(재무부)					
46	기정	군산	삼학	882-6	대	75	75	국(재무부)					
								군산시 삼학동 883-2	심경자				
47	기정	군산	삼학	883-2	대	92	92	군산시 삼학동 883-2	심경자				
48	기정	군산	삼학	883-5	대	41	41	군산시 삼학동 888 주공아파트 104/606	김충의				

49	기정	군산	삼학	883-6	대	2	2	국(재무부)					
50	기정	군산	삼학	884-4	대	18	18	군산시					
51	기정	군산	삼학	884-12	대	10	10	군산시 삼학동 884-3	이철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산시		가압류	
52	기정	군산	삼학	884-17	대	79	79	군산시 삼학동 884-17	이한수				
53	기정	군산	삼학	884-18	대	53	53	군산시 삼학동888	박동필				
54	기정	군산	삼학	884-19	대	43	43	군산시 삼학동 884-19	정동석				
55	기정	군산	삼학	884-20	대	79	79	군산시 삼학동 884-20	정태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가압류 근저당	
56	기정	군산	삼학	884-31	대	12	12	군산시 삼학동 883-2	심경자				
57	기정	군산	삼학	884-32	대	13	13	국(재무부)					
58	기정	군산	삼학	884-33	대	13	13	군산시 삼학동 884-33	김순옥				
59	기정	군산	삼학	884-39	대	40	40	군산시 삼학동 884-39	강신권	주식회사 국민은행		가압류	
60	기정	군산	삼학	884-40	대	46	46	군산시 삼학동 884-40	조내식				
61	기정	군산	삼학	884-43	전	4	4	군산시					
62	기정	군산	삼학	884-44	전	10	10	군산시 삼학동884-4	박종수				
63	기정	군산	삼학	884-65	전	28	28	군산시					
64	기정	군산	삼학	888-36	도	373	44	군산시					
65	기정	군산	삼학	888-37	대	110	110	군산시 삼학동 888-37	오부전	군산신용협동조합		가압류	
66	기정	군산	삼학	888-82	대	66	66	군산시 삼학동 811-1 대우아파트 101/1104	김홍구				
67	기정	군산	삼학	888-84	대	76	76	군산시 삼학동 888-84	구자욱	군장새마을금고		근저당	
68	기정	군산	삼학	889-5	도	10	10	국(건설교통부)					
69	기정	군산	삼학	889-7	대	17	17	국(재무부)					
70	기정	군산	삼학	883-13	대	1	1	군산시 삼학동 888 주공아파트 104/606	김충의				
계	계					5,174	3,476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변경)조서													
번호	구분	소재재	관리번호	건축물현황			성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용도	면적(㎡)	층수		구조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기정	삼학동 881-2	관리 5번	주용도	면적(㎡)	층수	구조	강홍협	삼학동 881-2				
				가 옥	19.59	1	벽돌 슬래브						
2	기정	삼학동 881-2	관리 58번	가 옥	50.39	2	벽돌 슬래브	강홍협	삼학동 881-2				
				근 생	115.14	1	벽돌 슬라브						
3	기정	삼학동 881-5	관리 5-1번	가 옥	65.51	1	기 와	허일량	전주 완산 평화3가 752				
				창 고	3.91	1	벽돌 슬래브						
				가 옥	75.39	1	벽돌 슬래브						
4	기정	삼학동 881-15	관리 7번	가 옥	57.60	1	벽돌 슬래브	김봉순	삼학동 881-15				
5	기정	삼학동 881-20	관리 11번	가 옥	21.90	1	벽돌 슬래브	한연홍 김우현	삼학동 814-19 경창동 511-6 오르빌아파트 102/502				
				가 옥	20.00	1	벽돌 슬래브						
6	기정	삼학동 881-6	관리 62-2번	가 옥	47.50	1	벽돌 슬래브	전관용	삼학동 327-18				
				창 고	7.84	1	벽돌 슬래브						
				가 옥	21.46	1	벽돌 슬라브						
				가 옥	37.24	1	벽돌 슬라브						
				가 옥	35.40	1	벽돌 슬라브						
7	기정	삼학동 881-57	관리 19-25번	가 옥	26.20	1	벽돌 슬래브	주용운	삼학동 881-57				
8	기정	삼학동 881-57	관리 19-23번	가 옥	13.64	1	벽돌 슬래브	주용운	삼학동 881-57				
				가 옥	7.83	2	벽돌 슬래브						
9	기정	삼학동 881-60	관리 9-11번	가 옥	15.84	1	벽돌 슬래브	하순전	삼학동 881-60				
10	기정	삼학동 881-60	관리 9-13번	가 옥	15.48	1	벽돌 슬래브	장진완	삼학동 881-60				
11	기정	삼학동 881-60	관리 9-15번	가 옥	13.68	1	벽돌 슬래브	황치국	삼학동 881-60				
12	기정	삼학동 881-60	관리 9-17번	가 옥	16.92	1	벽돌 슬래브	정연봉	삼학동 881-60				
13	기정	삼학동 881-10	관리 62-8번	가 옥	54.00	1	벽돌 슬래브	김용환	미룡동 900-1 미룡(3)주공아파트 315/405				
				창 고	7.59	1	벽돌 슬라브						

14	기정	삼학동 881-8	관리 62-6번	가 옥	49.84	1	벽돌 스투트	임선옥	나운동 738-8 동신3차@505호					
15	기정	삼학동 882-3	관리 62-4번	가 옥	53.10	1	벽돌 스투트	석동원	서울 강북 구유동 535-53					
				가 옥	38.70	1	벽돌 스투트							
				가 옥	19.36	1	벽돌 스투트							
16	기정	삼학동 881-65	관리 5-3번	가 옥	36.31	1	벽돌 슬라브	이봉근	문화동 삼성아파트 5/203					
				창 고	3.42	2	벽돌 스투트							
				창 고	7.60	2	벽돌 스투트							
17	기정	삼학동 881-14	관리 5-2번	가 옥	28.09	1	벽돌 스투트	오세순	월명동 28-25					
18	기정	삼학동 881-13	관리 5-4번	가 옥	32.63	1	벽돌 스투트	이조원	회현면 월연리 482-1					
19	기정	삼학동 881-12	관리 5-6번	가 옥	14.75	1	벽돌 스투트	박상욱	삼학동 888					
20	기정	삼학동 881-11	관리 5-5번	가 옥	23.10	1	벽돌 스투트	경채욱	삼학동 881					
21	기정	삼학동 881-38	관리 5-7번	가 옥	25.35	1	벽돌 슬라브	황기열	삼학동 881-38					
22	기정	삼학동 881-63	관리 5-11번	가 옥	24.60	1	벽돌 스투트	여정수	산북동 3542 산북주공 207-208					
23	기정	삼학동 881-39	관리 5-9번	가 옥	27.00	1	벽돌 스투트	여정수	산북동 3542 산북주공 207-208					
24	기정	삼학동 881-16	관리 9번	가 옥	37.38	1	벽돌 스투트	박옥심	삼학동 881-16					
25	기정	삼학동 881-17	관리 7-2번	가 옥	31.80	1	벽돌 스투트	한덕현	삼학동 881-17					
				가 옥	14.16	2	벽돌 스투트							
26	기정	삼학동 881-18	관리 7-4번	가 옥	23.34	1	벽돌 스투트	김영광	삼학동 881-18					
27	기정	삼학동 881-41	관리 5-10번	가 옥	22.36	1	벽돌 슬라브	정진미	사정동 100 금호타운 205-1105					
				가 옥	22.36	2	벽돌 슬라브							
28	기정	삼학동 881-42	관리 5-12번	가 옥	24.00	1	벽돌 스투트	전복순	부안 변산 도청리 595					
29	기정	삼학동 881-45	관리 13번	가 옥	26.41	1	벽돌 슬라브	노인국	삼학동 881-36					

30	기정	삼학동 881-21	관리 11-2번	가 옥	30.34	1	벽돌 스투트	이해관	삼학동 272-12 삼학빌라 나동202				
31	기정	삼학동 881-22	관리 11-4번	가 옥	13.89	1	벽돌 스투트	박명호	수송동 830-1 수송세영@106/601				
				가 옥	5.78	2	벽돌 스투트						
32	기정	삼학동 881-19	관리 11-3번	가 옥	20.88	1	벽돌 스투트	신흥철	삼학동 330-3				
33	기정	삼학동 888-84	관리 59번	근 생	55.44	1	벽돌 슬라브	구자욱	삼학동 888-84				
				가 옥	42.70	2	벽돌 스투트						
				창 고	2.25	2	벽돌 스투트						
34	기정	삼학동 881-56	관리 60번	근 생	91.46	1	벽돌 슬라브	조정숙	삼학동 881-56				
35	기정	삼학동 888-82	관리 60-1번	근 생	38.14	1	벽돌 슬라브	김홍구	미원동 32				
36	기정	삼학동 888-37	관리 62번	근 생	78.40	1	벽돌 슬라브	오부전	삼학동 888-37				
				가 옥	78.40	2	벽돌 슬라브						
				근생(집포)	81.20	1	벽돌 슬라브						
				가옥(주택)	81.20	2	벽돌 슬라브 및 판넬						
				창고	34.80	3	블럭 스투트						
36-1	기정			계단실	1식		블럭 판넬						
36-1	변경	888-37	관리 62번	영업보상	1식		조양마트 (조양열음)	김충의	삼학동 888 주공아파트 104-606				
				가옥(주택)	40.60	1	벽돌 슬라브	심경자	신창동 18-11				
37	변경	삼학동 882-6, 883-5	관리 62-3번	가옥(주택)	40.60	1	벽돌 슬라브	김충의	삼학동 888 주공아파트 104-606				
				대 문	1식		철재						
38	기정	삼학동 883-2	관리 62-5번	가 옥	58.69	1	벽돌 슬라브	심경자	신창동 18-11				
				창 고	4.62	1	벽돌 스투트						
				창 고	3.19	1	벽돌 슬라브						
				보일러실	3.64	1	벽돌 스투트						
39	기정	삼학동 884-19	관리 19-28번	화장실	1.20	1	벽돌 스투트	정동석	삼학동 884-19				
가 옥	31.80	1	벽돌 슬라브										

40	기정	삼학동 884-17	관리 62-11번	가 옥	36.88	1	벽돌 슬라브	이한수	삼학동 291-3				
				가 옥	15.57	2	조립식						
41	기정	삼학동 884-20	관리 19-18번	가 옥	65.55	1	벽돌 슬라브	정태선	장제동 45-4 그린장미 102-903				
				가 옥	3.64	2	벽돌 슬레이트						
42	기정	삼학동 884-33	관리 62-7번	가 옥	40.48	1	벽돌 슬라브	김순옥	삼학동 884-33				
43	기정	삼학동 884-33	관리 68-8번	가 옥	35.20	1	벽돌 슬레이트	김순옥	삼학동 884-33				
44	기정	삼학동 884-39	관리 62-15번	가 옥	44.08	1	벽돌 슬라브	강신권	삼학동 884-39				
				가 옥	30.40	2	벽돌 슬레이트						
	변경	삼학동 884-39	관리 62-15번	가옥(주택)	44.08	1	벽돌 슬라브	강신권	삼학동 884-39				
				가옥(주택)	30.40	2	벽돌 슬레이트						
				계단심	1식		썬라이트						
45	기정	삼학동 881-43	관리 7-3번	가 옥	34.00	1	벽돌 슬라브	김현주	해망동 998-52				
46	기정	삼학동 884-40	관리 19-26번	가 옥	48.00	1	벽돌 슬레이트	조진오	대전 중구 태평동 253-1				
47	기정	삼학동 881-23		창 고	32.30	1	벽돌 슬레이트	김형대					
48	기정	삼학동 881-44		가 옥	26.25	1	벽돌 슬레이트	김봉순	삼학동 881-15				
49	기정	삼학동 881-24		창 고	10.37	1	벽돌 슬레이트	김필남					
50	기정	삼학동 881-65		우 물	7.50	1	철골+슬라브		공동소유				
51	기정	삼학동 884-44		가 옥	39.76	1	벽돌 슬레이트	박종수	삼학동 884-4				
				가옥(주택)	39.76	1	벽돌 슬레이트						
	변경	삼학동 884-44		창 고	3.00	1	목조슬레이트	박종수	삼학동 884-4				
				수도간	1식		콘크리트						

군산시 고시 제2011- 37호

고 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6월 3일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신명	지신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건설연	비고
					기성	면 적	면적률		
신설	17	공공청사	도로관리사무소	비양동 495-1 일원	-	중)3,535	3,535		

2.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도면 : 실음생략

3.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지형도면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1 - 38호

고 시

군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를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5월 일

I. 군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1.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

■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군산시 전체	456,524,971	-	456,524,971	100.0	
도 시 지 역	207,448,822	-	207,448,822	45.4	
주 거 지 역	소 계	18,733,713	증 433	18,734,146	4.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543,653	증 433	11,544,086	2.5
녹 지 지 역	소 계	82,088,662	감 433	82,088,229	18.0
	자연녹지지역	43,642,677	감 433	43,642,244	9.6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미룡동 92-6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33	250%이하	• 도곽오차 정정에 의한 경미한 선형 조정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시설 변경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	주간선	16,755	옥석리 9호광장 (내초동 산43-5도)	군장국가산단 지구계 (내초동 210-13도)	자동차 전용도로	군산 국가산단	건교37 ('76.3.27)	
변경	광로	2	1	50	주간선	16,755	옥석리 9호광장 (내초동 산43-5도)	군장국가산단 지구계 (내초동 210-13도)	자동차 전용도로	군산 국가산단	건교37 ('76.3.27)	선형 조정
기정	소로	2	675	8	국지도로	495	소로2-669	소로2-677	일반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교210 ('96.6.1)	
변경	소로	2	675	8	국지도로	498	소로2-669	소로2-677	일반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교210 ('96.6.1)	선형 조정
기정	소로	2	677	8	국지도로	300	중로2-59	소로2-676	일반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교210 ('96.6.1)	
변경	소로	2	677	8	국지도로	304	중로2-59	소로2-676	일반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교210 ('96.6.1)	선형 조정
기정	소로	2	733	8	국지도로	560	미룡동 286-3 광로2-1	옥정리 440-2 군산교도소	일반도로		건교117호 ('78.9.5)	
변경	소로	2	733	8	국지도로	560	미룡동 286-3 광로2-1	옥정리 440-2 군산교도소	일반도로		건교117호 ('78.9.5)	선형 조정

■ 도로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 고
변경	광로2-1	광로2-1	• 선형 조정	• 도곽오차 정정에 의한 경미한 선형 조정	
변경	소로2-675	소로2-675	• 선형 조정	• 도곽오차 정정에 의한 경미한 선형 조정	
변경	소로2-677	소로2-677	• 선형 조정	• 도곽오차 정정에 의한 경미한 선형 조정	
변경	소로2-733	소로2-733	• 선형 조정	• 도곽오차 정정에 의한 경미한 선형 조정	

나. 공간시설

■ 녹지 변경결정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광로2-1북 측	완충녹 지	7호광장~8호광장	170,658	증) 565	171,223	건고37 (76,3.27)	
변경	4	광로2-1남 측	완충녹 지	7호광장~8호광장	163,800	증) 297	164,097	건고37 (76,3.27)	

■ 녹지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변경	3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형 조정</li> <li>면적:170,658m<sup>2</sup> → 171,223m<sup>2</sup>(증 565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곽오차 정정에 의한</li> <li>경미한 선형 조정</li> </ul>	
변경	4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형 조정</li> <li>면적:163,800m<sup>2</sup> → 164,097m<sup>2</sup>(증 297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곽오차 정정에 의한</li> <li>경미한 선형 조정</li> </ul>	

II. 군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공고 제2011 - 803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 나. 위 치 :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2호 방조제 전면해역(신시도-비안도구간)
- 다. 사 업 비 : 10,548억원
- 라. 사업내용 : 접안시설 910m, 방파제 3,100m, 비안도 어선보호시설 300m, 호안 8,015m, 진입도로 1,332m, 부지조성, 준설 및 매립, 부대시설 각 1식
- 마. 사업기간 : 2011년 ~ 2020년 까지
- 바. 사업시행자: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사. 승인권자: 군산지방해양항만청

2. 주민공람 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2011년 5월 30일 ~ 2011년 7월 1일(33일간, 공휴일 포함)
- 나. 공람장소

구 분	공람장소	비 고
주민 공람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사무소 민원실	

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정보통신망 링크 : <http://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분	주민설명회		비 고
	일 시	장 소	
주민 설명회	2011년 6월 9일(목) 14:00~16:00	군산지방해양항만청 2층 대회의실	군산시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가. 대 상: 당해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 나. 제출기간: 공람기간 내 제출(2011년 7월 8일 18:00까지)
- 다. 제출의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라. 제출방법: 공람장소 및 설명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062-450-61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1-806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군산문화센터) 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군산문화센터)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5월 27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나운동 796번지의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군산문화센터)
- 2) 명 칭 : 구) KBS 건물 리모델링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 정(m <sup>2</sup> )	실시계획(m <sup>2</sup> )	비고
공공.문화 체육시설	문화시설	12,843.6	12,843.6	기존시설리모델링 (일부시설용도변경 통신→업무)
소 계			12,843.6	

4.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문화체육과, 공영사업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0. 6. ~ 2011. 5.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공고 제2011-816호

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백년광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백년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5월 27일

-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장미동 24-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
- 2) 명 칭 : 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백년광장)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 정(m <sup>2</sup> )	기조성(m <sup>2</sup> )	실시계획(m <sup>2</sup> )	비 고
미관광장	대로1-2	5,704m <sup>2</sup>	4,320m <sup>2</sup>	5,704m <sup>2</sup>	- 기존 도로 확장 - 기존 건물 보수
소 계				5,704m <sup>2</sup>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문화체육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1. 5. ~ 2012.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불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0-4445) 및 문화체육과(450-4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sup>2</sup> )	권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장미동	12	대	1,031.4	1,031.4	군산시					
2	"	13-1	대	347.1	347.1	군산시					
3		13-2	대	181.8	181.8	군산시					
4		14-1	대	165.3	165.3	군산시					
5		14-2	대	247.9	247.9	군산시					
6	"	14-3	대	79.3	79.3	군산시					
7	"	14-4	대	13.2	13.2	군산시					
8	"	23-1	대	1,005.0	1,005.0	군산시					
9	"	24-3	대	320.7	320.7	군산시					
10	"	24-4	대	76.0	76.0	군산시					
11	"	24-5	대	132.2	132.2	군산시					
12	"	27-1	대	178.5	178.5	군산시					
13	"	27-2	대	69.4	69.4	군산시					
14	"	27-4	대	102.5	102.5	군산시					
15	"	27-5	대	128.9	128.9	군산시					
16	"	27-6	대	6.6	6.6	국(건설부)					
17	"	27-7	도	16.5	16.5	군산시					
18	"	22-1	도	46,324.5	1,434.7	국(건설부)					
19	"	11-3	도	978.4	167.0	국(건설부)					
<b>합계</b>	<b>19필지</b>			<b>51,405.2</b>	<b>5,704.0</b>						

군산시 공고 제 2011 - 827호

# 군산시 도로명 변경 공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도로명 변경을 공고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30

## 군 산 시 장

- 공고기간 : 2011. 5. 30 ~ 2011. 6. 12(14일간)
- 대 상 : 2개 도로명(큰땀1길, 큰땀2길)
-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 : 원당1길, 원당2길
- 도로구간의 기종점 : 붙임 참조
- 도로명 변경사유 : 마을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 민원 요청
- 도로의 길이 : 붙임 참조
- 도로명 변경사유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가. 기간 : 2011. 5. 3 ~ 2011. 6. 12(14일간)
  - 나. 방법 : 서면(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다. 서식

연번	도로명안	의견 제출 사유	인 적 사 항	
			성명	연락처
예시)1	양안로	옛 지명인용	홍길동	010-XXX

- 도로명 변경 절차
  - 가. 공고된 도로명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의견 수렴 → 제출된 의견 군산시 새주소위원회 상정 → 군산시 새주소위원회 심의확정 → 도로명고시
- 기타
  - 가. 중심선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문의사항 :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리정보계 (☎ 450-6083)

붙임 : 도로명 조서 1부. 끝.

### 도로명 변경 심의조서

순번	관할행정구역	시점	종점	중심선	도로길이	당초 도로명	변경도로명	변경사유
1	회현면	금광리 487-2	금광리 308-3	도면참조	595m	큰땀1길	원당2길	원당마을의 마을명칭을 부여해달라는 주민의견수렴
1	회현면	금광리 426-2	금광리 841-3	도면참조	1250m	큰땀2길	원당1길	원당마을의 마을명칭을 부여해달라는 주민의견수렴

군산시 공고 제2011 -837호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계획 공고

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장기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군산시장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지원계획 : 30호 정도 예산 범위내 (예비자 10%추가 선정)
-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 지원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무주택자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
  - ◆ 도조례 시행(2010.12.31)전에 기존 장기임대주택입주자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기간
  - ◆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함
  - ◆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함 (최대 6년)
- 지원금액 : 호당 20,000천원 한도로 한다.
- 지원방법 : 장기임대주택 입주시 LH공사에 지급
- 신청접수 : 2011.06.09~06.13(3일간) / 토요일, 일요일 제외
  - \*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장소 : 군산시청 건축과(2층)

-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 신청자수가 공급물량 초과시 대상자 선정기준

- 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주거면적 (평)	12㎡ (3.6)	20㎡ (6.1)	29㎡ (8.8)	37㎡ (11.2)	41㎡ (12.4)	49㎡ (14.8)	52㎡ (15.8)

- ② 장애인 가구
- ◆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 ③ 다자녀 가구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
- ④ 소형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 ⑤ 추천에 의함
- ◆ 추천일시 : 2011. 06. 17. 14:00
  - ◆ 추천장소 : 군산시청 구내식당(지하)
  - ◆ 추천대상 : 신청인, 세대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 추천방법 : 군산시 청원경찰 입회하에 개인별 추천

- 신청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붙임)

- ◆ 주민등록등본
- ◆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 2011. 06. 17. 15:00 (건축과)

- ◆ 개인별로 휴대폰 문자 발송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 ◆ 건축과 450- 4475~6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 주소(현 거주지) : \_\_\_\_\_
- 현 거주지 거주면적 : \_\_\_\_\_ m<sup>2</sup>
- 연 락 처 : \_\_\_\_\_
- 가족사항(동거인) : \_\_\_\_\_ 명
- 가족 내 장애인이 있을 경우, 성명 : \_\_\_\_\_ (장애등급 : \_\_\_\_\_ 급)

### 희망주택 유형

- 국민임대주택 단지명 : \_\_\_\_\_
- 입주희망 평형 : \_\_\_\_\_ m<sup>2</sup>
- 임대보증금 : \_\_\_\_\_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 \_\_\_\_\_ 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 세대주 조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6월 일

신 청 인 : \_\_\_\_\_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3.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11- 842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1. 5. 31.

## 군 산 시 장

### 1.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1년 1월 1일
- 나. 개별필지수 : 185,120필지 (해망동 990-1번지와 185,119필지)
- 다. 공시사항
  - 1) 개별 단위 면적 : m<sup>2</sup>
  - 2) 개별필지별가격 : 원
- 라. 열람안내
  - 1)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및 시청 토지정보과(1층)
  - 2) 군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

### 2. 이의신청

- 가. 신청기간 : 2011. 6. 1 ~ 6. 31
-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 다. 제출장소 : 각 읍·면사무소(민원실) 및 시청 토지정보과(1층)
- 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기간내에 제출  
(서식비치 : 각읍·면사무소 및 시청 토지정보과)
-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와 재검증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450-6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별공시지가 개요

- 가. 공 시 기 준 일 : 2011년 1월 1일
- 나. 개별 단위 면적 : m<sup>2</sup>
- 다. 개별필지별가격 : 원
- 라. 개 별 필 지 수 : 185,120필지
- 마. 공 고 사 항 : 각 지번별 개별토지가격

### 2. 이의신청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 토지 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450-4477,6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공시지가	원/m <sup>2</sup>	의견가격
	신청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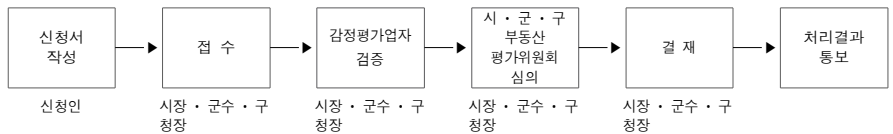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군산시 공고 제 2011 - 846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개간업무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 건설과 농촌개발계, 나포면사무소, 서수면사무소에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1.

**군 산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발기반 조성 ( 콩, 채소류 재배 )
2. 사업 위치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산120 외 2필지
3. 지목 및 지적 : 임야 7,923㎡
4. 사업시행면적 : 6,039㎡
5. 사업비소요액 : 자부담 4,807천원
6. 사업예정기간 : 2011년 6월 ~ 2012년 5월
7. 공고기간 : 2011년 6월 1일 ~ 2011년 6월 30일
8. 사업효과 : 농지확대 및 농업소득
9. 사업시행자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73 박종율외 1인

※ 기타 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군산시 건설과 농촌개발계 (☎450-4371) 또는 개정면사무소(☎451-4058)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 1. 사업 신청지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산120 외2필지

## 2. 사업의 목적

공,발작물재배

## 3. 사업 신청인

주 소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73

신청인(법인명) : 박종율외 1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4. 산지전용 면적조서

(단위:M2)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제외면적	비고
				대지	도로	계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산120	임	5,852	4,513		4,513	1,339	
	산120-2	임	1,464	1,166		1,166	298	
	82-2	임	607	360		360	247	
계	4 필지		7,923	6,039		6,039	1,884	

## 5. 사업내용

본 지역은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산120 외 2필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금번 신청지에 공,발작물재배를 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지역사회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6. 사업장내의 토사처리계획

사업 승인을 득한후 부지 조성공사 시행시, 절·성토 작업으로 인한 사토는 현장 부지내에 처리할 계획임.

## 7. 공사중 피해방지계획

공사중 교통소통 및 비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인근주민 및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겠음.

(공사중 피해방지사항 및 방지대책 별첨)

## 8.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

1) 본인 직영으로 운영계획

2) 준공 후 사업자가 시설유지 및 보수관리예정

## 9. 공사 규모

## 1) 토목공사

공	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부지조성	토공사	흙깎기	608.00	m <sup>3</sup>	
		흙쌓기	0.00	m <sup>3</sup>	
		벌개제근	6,039.00	m <sup>2</sup>	
		바닥고르기	4,627.00	m <sup>2</sup>	
		사면고르기	726.00	M	
배수공	토사배수로	W=0.65m, H=0.4m	426.00	M	
	침사지설치	5.0×5.0×1.5	3.00	개소	

## 2) 주변경관 조성공사

1)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공사및 배수시설 및 자연배수 시공

2) 완만한 경사시공 및 비탈면에 구조물 및 비탈보호 시공

## 11. 급수 및 배수, 오수처리시설

1) 해당사항없음.

2) 부지내 토사배수로 침사지를 설치 후 기존수로에 연결 배수함.

3) 해당사항없음.

<b>12. 투자 소요액</b>			
종자구입비	:	1,000,000	원
대지조성공사비	:	8,000,000	원
경영비	:	3,000,000	원
계	:	12,000,000	원
<b>13. 자금 조달계획</b>			
자금 조달 (원인자 100% 부담)			
본인 부담금	:	12,000,000	원
은행 융자금	:		원
계	:	12,000,000	원
<b>14. 사업 기간</b>			
공사착공	:	2011년 6월 일	
공사준공	:	2012년 5월 일	

<b>영농계획서</b>													
<b>1. 목적</b>													
본 개간지는 주변여건이 거의 농지(경지정리 및 전, 답등)로써 그동안 임야로써 수종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소나무류와 잡목등으로 이루어진 환경사지역으로써,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농가 소득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절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옥수수를 재배함으로써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창출케 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농민으로써 이윤을 얻어 가정경제부흥은 물론 지역경제에 기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b>2. 면적</b> (단위 : m <sup>2</sup> )													
개간면적	감보면적			실경작면적			비고						
19,870	-			19,870									
<b>3. 생산농작물</b> (단위 : m <sup>2</sup> )													
생산면적	농작물별면적												비고
	옥수수재배												
19,870	19,870												
<b>4. 연가별 경작계획</b>													
년 재배 작물	2011년						2012년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옥수수 재배													

**5. 영농방법**

현재 우리 나라의 영농방법은 기계화와 과학화 로 산업이 발달된 나라로써 본 개간지는 현재의 지형상태나

위치 일조권을 감안하고 주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영농방법을 기계화하여 고도의 영농방법을 동원하여

인력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다한 농약사용 등으로 농작물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본 개간지는

우리 고유의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생산하여 신선하고 건강에 유익한 생산지가 되도록 하고자 함.

**6. 수지채산계획(본 계획은 생산 불가 변동에 의거 변할 수 있음)**

ㄱ. 현재임야로서의 경제 가치는 전혀 없음

ㄴ. 수익계산

금액 재배작물	수입계산			비 고
	면적(m <sup>2</sup> )	단가(원)	금액(원)	
옥수수재배	19,870	2,500	49,675,000	
합계	19,870		49,675,000	

ㄷ. 영농경비계산

금액 재배작물	지출계산			비 고
	면적(m <sup>2</sup> )	단가(원)	금액(원)	
지출비	19,870	1,000	19,870,000	
합계	19,870		19,870,000	

ㄹ. 연간 순수계산

내력 년별	수입금액	지출경비	순수익계	순수익률	비 고
4년	49,675,000	19,870,000	29,805,000	60%	
합계	49,675,000	19,870,000	29,805,000	60%	

**7. 결과**

상위와 같은 영농계획에 의거 하여 개간 목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의 임야상태 보다는 토지 생산성이

수배에 이르므로 생산적 국토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